

# 2021년도 제2회 삼척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2회 삼척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삼척시인사위원회위원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인원	근무 예정지	직무내용
역학조사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보건정 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감염병 감시</li><li>감염병 기초 역학조사 및 현장조사</li><li>선별진료소 운영</li><li>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사무</li></ul>
일반행정 (대체인력)	한시임기제 9호 -주35시간-	7명	시청 또는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휴직자 등 업무대행 -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일반행정 업무 등</li><li>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사무</li></ul>

※ 채용계약기간 : 2년(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는 출산휴가, 휴직 등 결원 발생시 순차적 임용(대체인력뱅크 운영)  
단, 근로계약 만료 이전이라도 휴직복직 또는 신규임용자 배치 등 인원 보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중복지원 불가

## 2. 응 시 자 격

###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거주지 : 시험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사람

※ 단, 삼척시 거주기간(합산기간)에 따라 서류심사 가점 부여(붙임 서류심사표 참조)

다. 성 별 : 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연 령 :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마. 직무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역학조사관	<p><b>간호사 면허</b>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li> </ol> <p>※ 관련분야 경력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호사 면허 취득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에서 간호 또는 감염병 관련 실무경력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li> </ul>
일반행정 (대체인력)	<p>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관련분야 경력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일반행정 관련 실무경력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li> </ul>

- 주 1. 경력산정시 시간단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인정함.  
 2. 채용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3.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정보화 자격증, 사무관리(워드, 컴퓨터활용능력)등 자격증 및 기타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기준표에 따라 채용분야별 서류전형에서 가점 부여
- ※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음
- 전임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3. 보수 및 복무

### 가. 보 수

- (시간선택제임기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 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한시임기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역학조사관)	연48,111천원	연34,320천원	주35시간
한시임기제 9호 (일반행정)	월1,474,200원		주35시간

- ※ 기타 수당(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근무시간 : 주5일 35시간

다. 기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름

## 4.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종합 심사하여 2차시험(면접시험) 응시 적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4항)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동일할 경우 재공고 실시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및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을 종합 평가하여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 삼척시 홈페이지 공고

## 5. 시험 일정

공고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 구분	시험 일자 및 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21.03.9. ~ 2021.03.19.	2021.03.17. ~ 2021.03.19.	서류전형			2021.03.23.(화)
		면접시험	2021.03.23.(화)	2021.03.26.(금)	2021.03.30.(화)

##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3. 17. ~ 3. 19. (3일간)

나. 접수장소 : 삼척시청 총무과 인사부서(☎ 033-570-3234)

##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단, 우편(등기)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유효한 접수로 인정함

※ 우편(등기)접수 : (295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편물에 동봉하여야 하며, 접수된 응시표는 이메일로 송부함

##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홈페이지 다운로드)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자는 삼척시 수입증지 인증 후 원서 제출(인증처 : 시청 본관 1층 민원실 2번 창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증명서 제출시)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홈페이지 다운로드) 각 1부.

③ 직무수행 계획서(직무제안 포함 A4 용지 5매이내 : 서식 참조) 1부.

④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⑤ 자격검증 동의서 각 1부.

⑥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⑦ 경력(재직)증명서 1부.(6개월 이내 발급)

- 경력(재직)증명서는 응시분야 관련 실무에 한하여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날인과 연락처, 응시자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근무기간과 상근/비상근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 경력은 경력 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 반드시 명기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근무여부 인정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서 관련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⑧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역학조사관 필수 자격증 : 간호사면허증

- 정보화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자격증 등 : 제출자에 한하여 응시분야와의 관련성을 심사 후 서류전형에서 우대함.

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⑩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최종합격자에 한함)

마. 응시원서 등 다운로드 : 삼척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알림마당/채용·시험공고)

##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및 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기 장소에 입실하시고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 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삼척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삼척시청 총무과 (☎ 033-570-3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기제공무원 서류전형 심사표

□ 응시분야 : 역학조사관

접수번호		성명		
구분	세부항목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30		
채용예정직무 분야경력 (15점)	- 9년이상	15		
	- 7년이상 9년미만	12		
	- 5년이상 7년미만	9		
	- 3년이상 5년미만	6		
	- 1년이상 3년미만	3		
	- 근무경력 요건 불충족	0		불합격
정보통신 및 사무관리 자격증 (5점)	- 정보통신처리분야(산업기사 이상) - 컴퓨터활용능력 1급	5		
	- 정보통신처리분야(기능사) -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	3		
삼척시 거주기간 (10점)	- 5년 이상	10		
	- 1년 이상 5년 미만	5		
	- 1년 미만	1		

심사일자 :           년    월    일

평정자	소속	총무과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총무과	직급		성명		(인)

